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706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6월 16일

제 안 자 : 도시계획균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, 중복 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함

2. 주요내용

-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과 점검·권고 기능을 구분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함 (안 제9조제2항 본문)
- 청년 의무위촉 제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대로 유지함
(안 제9조제2항제5호)
- 청년정책 제안 및 추진현황 점검에 관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조문번호를 조정함 (안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)
-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대로 유지함 (안 제9조제5항)
-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 현황 점검·평가에 대한 사항을 현행대로 유지함
(안 제10조제2항)
- 점검·평가 결과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10조제3항)
-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0조제9항)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·조정하며,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및 이행 상황을 점검·권고할 수 있다”를 “심의·조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또한, 필요한 경우 각 호 사항에 대해 점검·권고할 수 있다.

안 제9조제2항제4호 중 “비율”을 “비율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에 관한 사항
6.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
7.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안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포함하고, 성별·연령·직업 분야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노력”을 “포함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.

안 제10조제2항 중 “추진현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”를 “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.

안 제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·평가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안 제1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시장은 청년의 상시적·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,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(생략)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 <후단 신설> 1. ~ 3. (생략) 4.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5.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<신설> <신설> 6. (생략) ③·④ (생략)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1. ~ 4. (생략) ⑥~⑫ (생략)	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_____ <u>심의·조정하며,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및 이행 상황을 점검·권고할 수 있다.</u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청년정책에 관한 신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제안 및 자문</u> 6. <u>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및 결과에 대한 점검과 개선 권고</u>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 ⑤ _____ <u>포함하고, 성별·연령·직업 분야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노력</u>_____. 위촉직 위원은 임기 중 활동 내역을 연 1회 이상 보고하고,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활동 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⑥~⑫ (생략)	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_____ <u>심의·조정한다. 또한, 필요한 경우 각 호 사항에 대해 점검·권고할 수 있다.</u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<u>비율에 관한 사항</u> 5. <u>제10조제4항</u>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<u>범위에 관한 사항</u> 6. <u>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</u> 7. <u>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</u> 8. (현행 제6호와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 ⑤ _____ <u>포함</u>_____. <후단 삭제>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⑥~⑫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(생략)	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(현행과 같음)	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	수정안
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,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. <신설> ③·④ (생략)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0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⑥·⑦ (생략) <신설>	② _____ _____ _____ —— 추진현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③·④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 ⑥·⑦ (현행과 같음) ⑧ 시장은 청년의 상시적·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으며,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, 그 내용을 청년에게 환류하여야 한다.	② _____ _____ _____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.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·평가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 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 ⑥ —— 제4항 ——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. ⑦·⑧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) ⑨ 시장은 청년의 상시적·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,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또한, 필요한 경우 각 호 사항에 대해 점검·권고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제4호 중 “비율”을 “비율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제10조제3항”을 “제10조제4항”으로, “범위”를 “범위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

7. 청년 제안 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제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·평가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⑨ 시장은 청년의 상시적·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,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(생략)	제9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 <후단 신설>	② ----- ----- . 또한, <u>필요한 경우 각 호 사항에 대해 점검·권고할 수 있다.</u>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	4. ----- ----- <u>비율에 관한 사항</u>
5.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<신설>	5. 제10조제4항 ----- ----- <u>범위에 관한 사항</u>
<신설>	6. <u>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</u>
6. (생략)	7. <u>청년 제안 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</u>
③ ~ ⑫ (생략)	8. (현행 제6호와 같음)
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·② (생략)	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③ <u>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·평가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</u>
③·④ (생략)	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

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0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⑥·⑦ (생략)

<신설>

⑥ ----- 제4항-----

-----.

⑦·⑧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)

⑨ 시장은 청년의 상시적·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,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